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3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3월 16일

나. 발의자: 이성수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3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3. 3.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예산의 이월 및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특별회계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정진)

- 본 조례안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관리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을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을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부대경비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 이월사용,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한 발전소는 없지만, 인근 양천구와 마포구에 소재한 발전소가 우리 구에서 5km 이내에 위치하여 2015년부터 지원금을 교부받고 있기에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
----------	-----

발의연월일 : 2023년 3월

발 의 자 : 이성수, 전승관, 김지연
양송이 의원(4인)

1.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예산의 이월 및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마. 특별회계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3. 8. ~ 2023. 3. 13):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세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